

부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1. 11. 26

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1. 11. 26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9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1. 12. 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형석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와 규모의 확대 등 급변하는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투자심사의 근거를 조례로 정함으로써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정된 투자심사의 시기, 대상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하여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타 자치단체와 관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투자심사 대상을 정함(안 제2조제1항)
- 현행 훈령에 의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별도의 위원회로 구성하고 전문가 위촉의 규정을 두어 심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(안 제4조)
- 투자심사 주기를 다음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도록 명확히 하고 심사의 일정을 상·하반기의 정기심사제로 하여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,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함(안 제5조)
- 투자심사 의뢰받은 사업 중 계획의 타당성이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적정·조건부 추진·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함(안 제6조)
-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거나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보류된 사업,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났더라도 일정규모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도 당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투자심사를 다시 하도록 함(안 제7조)
- 투자심사 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존재원의 신청 및 예산편성 등의 재정관련 계획에 반영 되도록 함(안 제9조)

3. 질의 및 답변내용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제4조6항 수당, 여비지급을 민간전문위원에게 지급하는데 당연직공무원도 지급하는지?	○ 공무원은 지급하지 않습니다.
○ 수당, 여비지급을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지급해야 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?	○ 네.
○ 7조1호 50% 이상 늘어난 사업은 너무 과하지 않은지?	○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. 그걸 준용하는 겁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요지

○ 별 침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538호
의결년월일	2001. 12. 24 (제92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12. 22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투자심사 대상의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투자사업 중 전액 국가재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전액 국·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하고
-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15인 중 민간전

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

-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
- 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, 규모 및 자원조달 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심사결과의 부적정란에 타당성이 결한 사업이 해당되는바 이는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삭제
- 사후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"강구할 수 있다"를 "강구하여야 한다"로 하고
- 사후 효과분석을 위한 자료제출은 시장이 직접 하지 않고 투자심사 주관국장이 한다고 함

2. 주요골자

- 투자심사대상심사기준적용배제대상사업 명시(안 제2조제1항4호)
- 민간인 전문가를 1/2 이상 포함하도록 함(안 제4조제2항)
- 위원 중 공무원이나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지급(안 제4조제6항)
- 투자심사 중 주관국장이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는 조항삭제(안 제6조제2항)
- 투자심사결과 적정, 조건부 추진, 재검토 또는 부적정 기준 항목을 제2항으로 함(안 제6조제3항)
-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규정(안 제10조제1항)
- 투자심사 주관국장이 사후효과 분석자료를 심사의뢰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(안 제10조제2항)

부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항제4호 중 "국가재원을"을 "국·도비를"로 한다.

안 제4조제2항 중 "구성하며"를 "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"로 하고 제6항 중 "위원회"를 "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"로 한다.

안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 중 "강구할 수 있다."를 "강구하여야 한다."로 하고, 제2항 중 "시장은"을 "투자심사 주관국장은"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투자심사대상) ①(생략)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	제2조(투자심사대상) ①(현행과 같음) ②.....

<p>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4. 전액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</p> <p>제4조(투자심사위원회) ①(생략)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</p> <p>③~⑤(생략)</p> <p>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에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(투자심사결과통보 등) ①(생략)</p> <p>②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, 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이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.</p> <p>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, 조건부 추진, 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제10조(사후 효과분석)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며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.</p> <p>②시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.....</p> <p>4.군·도비를.....</p> <p>제4조(투자심사위원회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...</p> <p>③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.....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.....</p> <p>.....</p> <p>제6조(투자심사결과통보 등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삭제</p> <p>②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제10조(사후 효과분석) ①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②투자심사 주관국장은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--	---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, 제30조의3 및 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·융자사업(이하 “투자사업”이라 한다)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투자심사대상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.

- 1.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
- 2. 타 시·군 및 자치구와 관련되는 사업
- 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법령 또는 관련 사업계획에 의하여 관계·중앙행정기관의 검토가 선행된 사업
- 2.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3. 전액 민간자본 또는 외자를 유치하여 시행하는 사업
- 4. 전액 국·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

제3조(투자심사기준)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
- 2. 중·장기지역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
- 3. 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의 상환능력
- 4. 재정·경제력 효율성 등

제4조(투자심사위원회) ①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투자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

③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된다.

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투자심사의 절차)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투자심사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되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, 하반기 심사는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를 할 수 있다.

③사업주관 국장 및 부천시재무회계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관서의장(이하 "심사의뢰자"라 한다)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상반기 심사는 2월 5일까지, 하반기 심사는 7월 5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.

제6조(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) ①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심사 주관국장

은 심사를 완료한 후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상반기 심사는 5월 5일까지, 하반기 심사는 10월 5일까지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는 적정·조건부추진·재검토 또는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 적 정 :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
- 2. 조건부추진 :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
- 3. 재 검 토 : 사업의 규모, 시기, 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
- 4. 부 적 정 :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

제7조(재심사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여부 등에 대한 재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.

- 1. 투자심사 후에 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
- 2. 투자심사 후에 3년 이상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
- 3.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50퍼센트 미만 늘어난 사업이라도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
 - 가. 시 자체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10억 이상 늘어난 사업
 - 나. 도 의회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30억 이상 늘어난 사업
 - 다. 중앙 의회 심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 후 사업비가 200억 이상 늘어난 사업

제8조(심사결과에 대한 조치) ①시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②심사의뢰자는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 및 사업추진 상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투자심사 주관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지방재정관련계획과의 연계운영) 시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6조 규정에 의한 심사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- 1.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
- 2. 지방채발행의 승인신청
- 3.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
- 4. 양여금의 지원신청
- 5. 국·도비의 보조신청
- 6. 기타 지방재정관련 계획의 수립

제10조(사후효과분석) ①시장은 투자가 완료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후효과의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결과를 차후 투자심사에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투자심사 주관국장은 사후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